

저수지 명칭 후부 요소 적용기준(제9조 관련)

종류	후부요소 적용기준	후부요소															
저수지 (貯水池)	<p>○ 명칭 후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width: 15%;">기능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종 류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후부 요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치수 시설</td> <td> ① 식용,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*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저수지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 ②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'댐'(예: 청평댐) 및 「방조제 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'방조제'(예: 시화방조제)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단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width: 40%;">기 능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후 부 요 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치수시설①+유적지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, 방죽, 거, 제 등 사용가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치수시설①+주변 공원 조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호' 사용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종류가 저수지인 것은 변하지 않음에도 후부요소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부요소로 '지, 방죽, 거, 제, 호' 등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지명유래에 기록하여 관리</p> <p>- '소류지'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후부요소로 사용하지 않음 * 소류지는 '늪지대'를 잘못 가리켜 이르는 말임</p> <p>- '방축'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'방죽'으로 순화함 * 저수지의 독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로는 '방축'이 아닌 '축방'이 적합하며, '축방'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단어인 '방죽'은 독과 못 부분을 아울러 저수지 전체를 이르는 말임</p>	기능	종 류	후부 요소	치수 시설	① 식용,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*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	저수지		②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'댐'(예: 청평댐) 및 「방조제 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'방조제'(예: 시화방조제)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	호	기 능	후 부 요 소	치수시설①+유적지 등	지, 방죽, 거, 제 등 사용가능	치수시설①+주변 공원 조성	'호' 사용가능	<p>. 저수지</p> <p>. 호(湖)</p> <p>. 지(池)</p> <p>. 방죽</p> <p>. 거(渠)</p> <p>. 제(堤)</p>
	기능	종 류	후부 요소														
치수 시설	① 식용,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*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	저수지															
	②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'댐'(예: 청평댐) 및 「방조제 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'방조제'(예: 시화방조제)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	호															
기 능	후 부 요 소																
치수시설①+유적지 등	지, 방죽, 거, 제 등 사용가능																
치수시설①+주변 공원 조성	'호' 사용가능																